

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”을 “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”을 “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영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”을 “영 제24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영 제24조제6항”을 “영 제24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6조제7항 또는 제9항”을 “영 제26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 제2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”을 “영 제26조제9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법제업무 운영규정</u> 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행정기본법</u> 」 및 「 <u>법제업무 운영규정</u> 」----- -----.
제3조(입법계획의 수립·시행)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「 <u>법제업무 운영규정</u> 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3조(입법계획의 수립·시행) -- ----- ----- ----- 「 <u>행정기본법</u> 」 및 「 <u>법제업무 운영규정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.
제14조(법제정비의 추진절차) ① · ② (생략)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14조(법제정비의 추진절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영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국민법제관) ① 법제처장은 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정비·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22조(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)

① (생략)

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영 제2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

제15조(국민법제관) ① -----

-- 영 제24조제7항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영 제26조제7항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영 제26조제9항-----

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